예 산 총 칙

2023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871,585,705	26,147,571
일반회계	843,426,901	25,302,807
특별회계	28,158,804	844,764
공기업특별회계	17,287,917	518,638
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	17,287,917	518,638
기타특별회계	10,870,887	326,127
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	0	0
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	87,601	2,628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977,164	29,315
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	187,920	5,638
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	841,320	25,240
수질개선 특별회계	6,773,994	203,220
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	2,002,888	60,087

제 2 조 세입.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. 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686,186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7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,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간주처리(예산계상 및 이월조치) 할 수 있다.